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4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2일 서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로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로</u> <u>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u>

현행법 제8조¹⁾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

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축사의 신·증축 제한, 일정 조건 하 축사의 이전 허용²⁾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와 같은 제한적 이전 허용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의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안은 법률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가축

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⑤ (생략)

2) 예 :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소·젖소)축사 이전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소·젖소)축사시설로서, 기존 배출시설을 전부 폐업·철거하고 기존 허가·신고 면적 규모 이내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하되 같은 읍·면·동내 지역에 이전·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전될 축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주민들로부터 70퍼센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 등의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을 허용³⁾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하지만,

개정안은 ① 지역주민 과반수 동의에 따르도록 한 점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② 축사 이전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이전 등 관리는 가축사육·토지이용현황, 수질오염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보다 적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